

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5]

안전검사필증의 규격(제15조제2항 관련)

1. 안전검사필증의 크기: 가로 80밀리미터 및 세로 80밀리미터
2. 안전검사필증의 두께: 0.2밀리미터
3. 안전검사필증의 재질: 반사 필름원단으로 하되, 숫자 및 문자는 실크 인쇄를 한다.
4. 안전검사필증의 색상
 - 가. 바탕색: 파란색(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), 주황색[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(이하 이 별표에서 “수상레저사업자”라 한다)인 경우]
 - 나. 테두리 색상: 검은색
 - 다. 숫자 및 문자 색상: 흰색
5. 안전검사필증의 제작
 - 가. 안전검사필증에는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을 지름 20밀리미터인 원형으로 도안하여 넣어야 한다.
 - 나. 부착하기 쉽도록 뒷면에 내구성이 강한 특수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.
6. 안전검사필증에는 신규검사 또는 정기검사가 완료된 연도와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.

(예시: 안전검사필증의 도안)

개인용	수상레저사업자용
	